

# 예산총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5,388,212	19,961,646
일반회계	570,652,982	17,119,589
특별회계	94,735,230	2,842,057
공기업특별회계	64,648,975	1,939,469
상수도사업	19,974,294	599,229
하수도사업	44,674,681	1,340,240
기타특별회계	30,086,255	902,588
의료급여기금	1,863,614	55,9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81,524	35,446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33,030	6,99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260,993	37,830
수질개선관리	5,397,751	161,933
농공지구조성	3,928,922	117,868
중소기업육성자금	5,707,452	171,224
보건진료	2,015,221	60,457
농업발전기금	8,497,748	254,93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붙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30,050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0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